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34
----------	------

제출년월일 : 2012. 11. 19.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 유지와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및 오기 등을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영유료주차장 급지 체계가 획일화(총 66개소 중 63개소가 1급지에 편중)되어 있으며, 주차수요가 일부 주차장에 집중되어 운영효율이 떨어짐. 이에, 급지 설정 기준을 변경하여 주차수요의 효율적인 분배 및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제2항 별표 2)
- 나.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자 중 ‘다자녀 가정 차량’ 및 ‘우수자원봉사자’가 현재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이용자간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관내 모든 공영유료주차장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제2항 별표 2)
- 다.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요금감면 적용기준에 근거법률을 명시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제2항 별표 2)
- 라. 사전 주차요금 징수대상 확대(중앙역사거리 공영주차장 포함)
- 마.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리 책임범위 및 불분명한 단속기준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제6호,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6항, 제7조제2항 별표 2)
- 바. 「건축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사항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 15조제1항 별표 5)

개정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법」 제8조, 제10조의2, 제14조, 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7조, 제15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2. 10. 11. ~ 2012. 10. 30.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현행 조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차량(2.5톤이상) 및 영업용 차량(단, 개인택시, 1톤이하(자가용)화물차 제외),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주차구획내 주차가 불가한 차량(차량등록증상의 제원 중 차량의 길이 및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의 초과 등)등의 경우

제6조 제2항중 “발생한 경우”를 “발생한 때에는”으로, “증명한 경우를”을 “증명한 경우와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 주차장에 해당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로 한다.

제10조 제3항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요금 외 20,000원의 부정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부정주차 금지 및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운영시간 내에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의 소통에 지장을 줄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중 “1·2·3급지 주차장”을 “공영유료주차장”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각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소관 실·과		교통정책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 박 광 식
	담당·팀장 직위·성명	주차장계장 도 원 중
	담당자 성명·전화	조 향 영 (행정 2595)

[별표 2]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제7조 및 제10조 관련)

급 지 구 분	30분 기본요금 (1회주차 1구역 최초 30분)	10분당가산요금 (30분 초과시 1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선불)			
				주간	야간	전일	주말 · 공휴일
1 급지	600원	300원	9,000원			80,000원	
2 급지	400원	200원	4,500원			50,000원	
3 급지	300원	200원	4,500원			40,000원	
4급지				20,000원	15,000원	30,000원	5,000원 (수암동 지역)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주간 : 08:00 ~ 19:00
 - 나. 야간 : 19:00 ~ 다음 날 08:0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시장이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지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1급지 : 상업지역("나"목의 주차장 제외)
 - 나. 2급지 :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주차수요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 다. 3급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나"목의 주차장 제외) 및 환승주차장
 - 라. 4급지 :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지역의 주차장)
4. 철도 환승목적으로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이용 확인증 또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 받은 자에 한하여 3급지 요금을 적용하며,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월 정기 주차권은 주차장 관리자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주차요금은 지역특성 및 차종에 따라 정하되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6.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하되, 이중감면은 하지 아니 한다.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나. 안산시에서 발행한 자가용 부제 운행참여 스티커 부착 차량은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할인하여 부과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관련증서를 지니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주차 후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다만, 4급부터 7급 까지의 상이자 및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6급부터 14급까지의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해서는 주차 후 1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1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경한다.
 - 마.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안산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 바. 시책업무 추진목적으로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 자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30분을 주차할 수 있다. 다만, 30분 이후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사. 외교사절, 외교관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자의 자동차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아.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면제·할인할 수 있다.

자.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200시간 이상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퍼센트를 1년간 감면한다.

차.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 후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이후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다자녀 가정은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의 안산 행복플러스 카드 등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가.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 공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중 공용시설보호지구

 : 09:00 ~ 19:00 (토요일 09:00 ~ 14:00)

나. 상업지역(일반 상업지역중 공용시설 보호지구 제외), 준주거지역

 : 09:00 ~ 23:00

다. 환승(역세권)주차장 : 06:00 ~ 22:00

라. 삭제

8. 기본요금은 1회 1구역 최초 30분으로 정수하되,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가산하여 정수한다.

9.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10. 주차요금은 1일(00:00~24:00)동안 주차장 운영시간내에 이용한 시간에 한하여 부과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 ²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 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3. 제1종 균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균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m ² 초과 150m ²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m ²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87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1.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수 이하의 끝 수는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 호실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한다)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th> <th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설치기준 (대/제곱미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85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5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70</td> </tr> </tbody> </table> 2. 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경우 1대/60m ² 당(상업 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1대/120m ² 당)(소수 이하의 끝 수는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다.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 (대/제곱미터)	85이하	1/85	85초과	1/70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 (대/제곱미터)						
85이하	1/85						
85초과	1/70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0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50m ² 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m ² 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1종 균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 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로 본다.)
1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경사피트식
- 나. 2단 경사승강식
- 다. 2단 단순승강식
14.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

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8]

사전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제8조제4항 관련)

급지	주차장명	위 치
1	동원빌딩앞	고잔동 540
1	금산빌딩앞	고잔동 540-6
1	중앙하이츠빌앞	고잔동 539-11
1	중앙역 사거리	고잔동 554-2
1	근로자시민문화센터옆	선부동 1076-12
1/노상	이삭길	고잔동 729~749일원
1/노상	진홍1길	고잔동 724-4~727일원
1/노상	진홍6길	고잔동 703~706일원
1/노상	다리간길	고잔동 682~683일원
1/노상	진홍5길	고잔동 707~718일원
1/노상	진홍2길	고잔동 769~775일원
1/노상	중보길	이동 716~721일원
1/노상	양지현길	이동 715~712일원
1/노상	솔재길	초지동 727~734일원
1/노상	청솔2길	초지동 742~744일원

비고 : 사전 주차요금 징수 시작은 18:00 부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도시철도 이용확인증(별표2 제4호와 관련)

수도권 도시철도 이용확인증

○ 확인 일 시	
○ 이용 철도역 확인란	

1. 위와 같이 도시철도 이용을 확인받은 이용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환승주차 요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기본요금 (1구획당 30분)	가산요금 (30분 초과시 10분당)	1일 주차요금
환승 차량	300	200원	4,500원

2. 다만, 본 확인증의 혜택은 시장이 지정한 환승주차장(당해 주차요금 계시판에 지정여부 표시)에 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차종 및 번호 :

연락처 :

신청인 성명 : (인)

○ ○ 역 환승주차장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거부 금지) (본문 생략) 1.~5. (생 략) <u><신 설></u> 6.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조(주차거부 금지)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차량 (2.5톤이상) 및 영업용 차량(단, 개인택시, 1톤이하(자가용)화물 차 제외),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주차 구획내 주차가 불가한 차량(차량등록증상의 제원 중 차량의 길이 및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의 초과 등)등의 경우 7. (현행과 같음)
제6조(계약의 해지 등) ① (생 략) ② 주차장 관리자는 공영유료주차장 내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발생한 때에는 ----- ----- 증명한 경우와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해당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 ----- ----- -----

제10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운영)

①~② (생략)

③ 거주자 전용주차 구간에는 주차구획 및 이용시간을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 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신설>

제13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① (본문 생략)

1.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 2.5톤 미만의 개별화물자동차 : 1·2·3급지 주차장 주차면적의 30퍼센트 범위 이내

2. (생략)

②~③ (생략)

제10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제9조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요금 외 20,000원의 부정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부정주차 금지 및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운영시간 내에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의 소통에 지장을 줄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1. ----- 공영유료주차장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제7조 및 제10조 관련)

급 지 구 분	30분 기본요금 (1회주차 1구역 최초 30분)	10분당 가산요금 (30분 초과시 1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선 불)	월 정기 주차요금 (선불)				
	주간	야간	전일	주말·공휴일				
1 급 지	600원	300원	6,000원			80,000원		
2 급 지	400원	200원	3,000원			50,000원		
3 급 지	환승	300원	200원	3,000원		40,000원		
	비환승	600원	300원	6,000원		80,000원		
거주자 전용주차장				20,000원	15,000원	30,000원	5,000원 (수암동 지역)	

1. (생략)

2. (본문 생략)

가. 주간 : 08:00 ~ 20:00

나. 야간 : 20:00 ~ 다음 날 08:00

3. (본문 생략)

가. 1급지 : 2·3급지를 제외한 주차장으로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안산동 소재 수암봉주차장

나. 2급지 : 신천길앞 주차장, 외국인주민센터앞 주차장, 반월동·대부동·안산동 소재 주차장(수암봉 주차장을 제외한다)

다. 3급지 : 시장이 지정한 역세권 환승주차장

라. 거주자 전용주차장 : 거주자 또는 근로자 전용 노상주차장

4.~5. (생략)

[별표 2] -----

급 지 구 분	30분 기본요금 (1회주차 1구역 최초 30분)	10분당 가산요금 (30분 초과시 1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선 불)	월 정기 주차요금 (선불)				
	주간	야간	전일	주말·공휴일				
1 급 지	600원	300원	9,000원			80,000원		
2 급 지	400원	200원	4,500원			50,000원		
3 급 지	300원	200원	4,500원			40,000원		
4 급 지				20,000원	15,000원	30,000원	5,000원 (수암동 지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주간 : 08:00 ~ 19:00

나. 야간 : 19:00 ~ 다음 날 08:00

3. (현행과 같음)

가. 1급지 : 상업지역(“나” 목의 주차장 제외)

나. 2급지 :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주차수요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나” 목의 주차장 제외) 및 환승주차장

라. 4급지 :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지역의 주차장)

4.~5. (현행과 같음)

6. (본문 생략)

가.~라. (생 략)

마. 모범 납세자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안산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바.~아. (생 략)

자.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200시간 이상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퍼센트를 1년간 감면한다.

차.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 후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이후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다자녀 가정은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의 안산 행복플러스 카드 등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7. (본문 생략)

가.~나. (생 략)

다. 환승(역세권)주차장 : 05:00 ~ 23:00

라. 건축물식 공영유료주차장(주차빌딩) : 연중 휴일 없이 1일 24시간 운영

8.~9. (생 략)

6. (현행과 같음)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

바.~아. (현행과 같음)

자. --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대해서는 --

7.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환승(역세권)주차장 : 06:00 ~ 22:00

라. (삭 제)

8.~9. (현행과 같음)

10. 1일주차란 00:00~24:00 내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5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것을 말하며, 1일 주차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일 주차요금(선불)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생 략)		
2. 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소수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다.		
5. (생 략)	구 분	주차장설치기준 (대/전용면적)
	원룸형 주택	1/60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은 1/120)
	기숙사형 주택	1/65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은 1/130)

1.~10. (생 략)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14. (생 략)

10. 주차요금은 1일(00:00~24:00)동안 주차장 운영시간내에 이용한 시간에 한하여 부과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현행과 같음)		
2. ----- ----- 원룸형 주택의 경우 1대/60m ² 당(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1대/120m ² 당) -----		
5. (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

12.~14. (현행과 같음)

[별표 8] 사전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제8조제4항 관련)

급지	주차장명	위 치
1	동원빌딩앞	고잔동 540
1	금산빌딩앞	고잔동 540-6
1	중앙하이츠빌앞	고잔동 539-11
1	근로자시민문화센터옆	선부동 1076-12
1/노상	이삭길	고잔동 729~749일원
1/노상	진홍1길	고잔동 724-4~727일원
1/노상	진홍6길	고잔동 703~706일원
1/노상	다리간길	고잔동 682~683일원
1/노상	진홍5길	고잔동 707~718일원
1/노상	진홍2길	고잔동 769~775일원
1/노상	중보길	이동 716~721일원
1/노상	양지현길	이동 715~712일원
1/노상	솔새길	초지동 727~734일원
1/노상	청솔2길	초지동 742~744일원

비고 : 사전 주차요금 징수 시작은 18:00 부터로 한다.

[별표 8] 사전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제8조제4항 관련)

급지	주차장명	위 치
1	동원빌딩앞	고잔동 540
1	금산빌딩앞	고잔동 540-6
1	중앙하이츠빌앞	고잔동 539-11
1	중앙역 사거리	고잔동 554-2
1	근로자시민문화센터옆	선부동 1076-12
1/노상	이삭길	고잔동 729~749일원
1/노상	진홍1길	고잔동 724-4~727일원
1/노상	진홍6길	고잔동 703~706일원
1/노상	다리간길	고잔동 682~683일원
1/노상	진홍5길	고잔동 707~718일원
1/노상	진홍2길	고잔동 769~775일원
1/노상	중보길	이동 716~721일원
1/노상	양지현길	이동 715~712일원
1/노상	솔새길	초지동 727~734일원
1/노상	청솔2길	초지동 742~744일원

비고 : 사전 주차요금 징수 시작은 18:00 부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도시철도 이용확인증(별표2 제4호와 관련)

수도권 도시철도 이용확인증															
<input type="radio"/> 확인일시															
<input type="radio"/> 이용 철도역 확인란															
<p>1. 위와 같이 도시철도이용을 확인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승주차 요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회주차요금 (1구획당 30분)</th> <th>1일 주차요금</th> <th>월정기주차권</th> </tr> </thead> <tbody> <tr> <td>환승 차량</td> <td>200</td> <td>2,000</td> <td>30,000</td> </tr> <tr> <td>비 환승차량</td> <td>500</td> <td>5,000</td> <td>70,000</td> </tr> </tbody> </table> <p>2. 다만, 본 확인증의 혜택은 시장이 지정한 환승주차장(당해 주차요금 게시판에 지정여부 표시)에 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주소 :</p> <p>차종 및 번호 :</p> <p>연락처 :</p> <p>신청인 성명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radio"/> ○ 역 환승 주차장</p>				구 분	1회주차요금 (1구획당 30분)	1일 주차요금	월정기주차권	환승 차량	200	2,000	30,000	비 환승차량	500	5,000	70,000
구 분	1회주차요금 (1구획당 30분)	1일 주차요금	월정기주차권												
환승 차량	200	2,000	30,000												
비 환승차량	500	5,000	70,000												

[별지 제2호서식] 도시철도 이용확인증(별표2 제4호와 관련)

수도권 도시철도 이용확인증														
<input type="radio"/> 확인 일 시														
<input type="radio"/> 이용 철도역 확인란														
<p>1. 위와 같이 도시철도이용을 확인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승주차 요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기본요금 (1구획당 30분)</th> <th>가산요금 (30분 초과시 10분당)</th> <th>1일 주차요금</th> <th>월정기 주차권</th> </tr> </thead> <tbody> <tr> <td>환승 차량</td> <td>300</td> <td>200원</td> <td>4,500원</td> <td>40,000원</td> </tr> </tbody> </table> <p>2. 다만, 본 확인증의 혜택은 시장이 지정한 환승주차장(당해 주차요금 게시판에 지정여부 표시)에 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주소 :</p> <p>차종 및 번호 :</p> <p>연락처 :</p> <p>신청인 성명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radio"/> ○ 역 환승 주차장</p>					구 분	기본요금 (1구획당 30분)	가산요금 (30분 초과시 10분당)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권	환승 차량	300	200원	4,500원	40,000원
구 분	기본요금 (1구획당 30분)	가산요금 (30분 초과시 10분당)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권										
환승 차량	300	200원	4,500원	40,000원										